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018. 4.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북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8-14
----------	-------

2018. 4. 1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송병길 의원 외 9인
- 나. 제안일자 : 2018. 4. 4.(수)
- 다. 회부일자 : 2018. 4. 5.(목)

2.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건축법」 제53조의2제2항
-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
- 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의제4호

3. 제안이유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적용범위(안 제6조~제7조)
-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내용(안 제8조)
- 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경찰,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아. 대상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 우수사례 홍보(안 제12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나. 입법예고 (2018. 4. 4.~2018. 4. 8.) : 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조례안의 구성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및 사업(안 제7조~제8조),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 총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은

- 가.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¹⁾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나. 안 제9조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마포구 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 다. 안 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²⁾가 높아지고 있음.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활동에서 사전예방 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까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1)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부녀자 납치살인(김일곤 사건),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가

시행규칙」 등을 일부 반영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21개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기본 계획 수립시 마포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범죄예방 진단 결과 및 통계, 범죄위험지도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제 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할 것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원리】

- ▶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 지역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고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설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을 볼 수 있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안전감을 느낀다.
- ▶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 범죄자가 범죄목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발될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도로, 보행로, 조경, 조명, 건물의 입·출구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인도하고 사적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자연적 접근통제의 강화를 위해 자물쇠, 알람 시스템, 출입통제장치 등 물리적·기계적 수단이 사용된다.
- ▶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 어떤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적 공간이 분명해 질수록 사용자는 영역에 대한 통제감이 커지며 통제가 강화될수록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감소한다.
- ▶ **활용성의 증대(activity support)** :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 ▶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